

2021 이전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3차 모집공고

우리 재단법인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전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노인성 질환 중심 사회문제 해소형 Open Lab 생태계 구축)』의 기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 8. 4.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I 사업개요

□ 사업목적

이전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성 질환 중심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오픈랩 회원사 또는 노인성 질환 관련 의료기기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품의 인허가 획득 및 마케팅 지원 등의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 대상분야 : 헬스케어산업

□ 지원대상 : 강원도 내 소재기업 및 이전기업

1	중점기업	노인성 질환 직접 관련 기업
		노인성 질환(고혈압, 당뇨, 폐질환, 난청, 노안, 백내장, 치매, 우울증, 골다공증, 척추질환, 뇌경색 등)과 직접 관련된 제품 보유기업
2	유망기업	일반 헬스케어 기업
		기존 헬스케어 제품기업으로 OpenLAB을 통해 노인성 질환 중심 사회문제 연관 제품으로의 전환 및 확장성 기대
3	신규기업	헬스케어 분야로의 신규 진출기업
		신규 아이템 또는 사업전환을 통한 헬스케어 분야 신규 진출기업

※ 이전기업의 경우 이전확약서 제출 및 사업 기간 내 이전 완료(증빙자료 必) 가능 기업

※ 각 1~3순위 기업군에 따른 가점 부여 (1순위 : 3%, 2순위 : 2%, 3순위 : 1%)

(단, 가점 해당 소명자료는 신청기업에서 제출하고 인정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중복적용일 경우 높은 가점만 적용)

II 지원내용

□ 지원규모(예산) : 22백만원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세부 지원내용

과제명(지원목표)	지원내용 및 비용
○ 홍보물 제작 지원 (2건 내외)	- 의료기기 제품의 마케팅을 위한 홍보물(동영상, 브로셔, 매뉴얼, 카탈로그 등) 제작비용 지원 - 지원금액: 최대 5백만원(총 사업비의 90% 이내)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10% 이상 민간부담금 매칭, VAT 제외
○ 의료기기 인허가 컨설팅 지원 (4건 내외)	- 의료기기 제품의 국가별 인허가 제도와 품질경영시스템(GMP, ISO 13485 등) 인허가 획득과 유지를 위한 사전 컨설팅 과정에 대한 비용 지원 - 지원금액: 최대 3백만원(총 사업비의 90%이내)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10% 이상 민간부담금 매칭, VAT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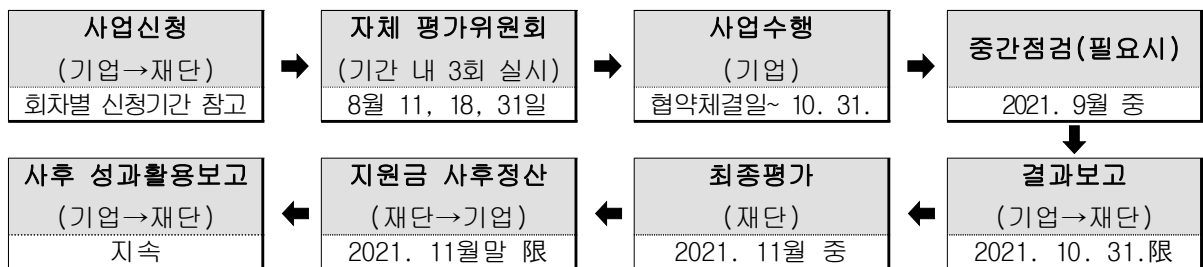
※ 교차지원 가능

III 추진일정

○ 수행기간: 협약 체결일 ~ 2021. 10. 31.(일)까지

※ 선정기업은 협약 기간 내에 규정에 따른 비용 선지출 및 결과보고까지 완료하여야 함

○ 수행절차



※ 과제수행 종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사후정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중간점검(필요시)

- 사업을 수행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상황 점검 및 지속 수행 여부 결정
- 사업수행 진척률, 협약 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 파악

○ 결과보고

- 협약 기간 내 사용된 지출금액(기업 선지출) 내역과 사업 추진실적 내용이 들어간 최종보고서 및 지원금(사후정산) 신청서를 정해진 제출기한 내에 제출

○ 최종평가

- 기업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기준으로 계획 대비 목표 달성, 사업화 가능성, 사업비 집행 적정 유무 등 평가하여 지원금 지급(사후정산)을 결정함
- 평가 결과 “불성실 수행”의 경우 특별평가 실시(제재 및 환수 여부 등 결정)
 - ※ 세부내용 ‘재단 기업지원사업 관리규칙’ 참고

IV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 8. 4.(수) ~ 8. 27.(금) 18:00까지

○ 신청기간에 따른 선정평가 일정

회차	신청·접수 기간	선정평가	비고
1	2021. 8. 4.(수) ~ 8. 9.(월)	2021. 8. 11.(수)	자체평가위원회(서면심의)
2	2021. 8. 10.(화) ~ 8. 16.(월)	2021. 8. 18.(수)	자체평가위원회(서면심의)
3	2021. 8. 17.(화) ~ 8. 27.(금)	2021. 8. 31.(화)	자체평가위원회(서면심의)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 작성 후 E-Mail 송부

※ E-Mail 접수 후 담당자 확인(필수)

○ 접수 및 문의처

담당자	연락처	주소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기업지원팀 이성원 연구원	033-760-6132 lsw@wmit.or.kr	(26354)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413호

○ 제출서류(※ 서류 제출 시 아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 (서식 1) 사업신청서(원본) 1부
- (서식 2) 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원본) 1부
- (서식 3)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원본) 1부

- 주관기관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시)
-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 1부
- 주관기관 최근 2개년(2019년 ~ 2020년) 재무제표 각 1부
 - ※ 2020년 재무제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주관기관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용역기관 사업자등록증 1부
- 용역기관 견적서 1부

V 평가기준

□ 평가방법 및 기준

○ 사전 서류검토

- 신청기업의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을 확인하고, 평가대상을 결정
- 사업의 부합성, 중복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 자체평가위원회

- 사전서류검토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체평가위원회(서면심의)로 진행
- 평가점수 70점 이상의 과제 중 예산 범위 내 고득점 순으로 선정 및 지원
 - ※ 관리규칙 제5조 2-2항 의거, 소액과제의 신속한 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 지표
사업계획 적정성 (40)	사업목표의 부합성	20	· 오픈랩 또는 노인성 질환 관련 의료기기 ※ 지원대상 우선순위에 따른 가점 포함
	비용의 적정성	10	· 신청비용의 합리성
	기간의 적정성	10	· 신청기간의 타당성
기술성 (30)	독창성	10	· 신청기술의 독창성
	기술수준	10	· 국내외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 제품의 우수성
	파급효과	10	· 타 분야로의 파급효과
사업성 (30)	시장진입 가능성	10	· 시장진출의 용이성
	시장점유 가능성	10	· 신청제품의 시장점유가능 정도
	마케팅전략의 합리성	10	· 사업화 지원의 효과성

※ 중점기업(1순위), 유망기업(2순위), 신규기업(3순위)에 따른 가점포함

VI

유의사항

□ 신청 제외대상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기업
- 기업의 부도, 법정관리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재단의 임대공장 임대료·관리비, 기술지원센터 장비·시설 이용료 및 지원사업 관련 민간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하고 있는 기업
-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다만, 회생인가 받은 자 또는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제외)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기업
- 금품 등 기업비위로 인하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기업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과제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기업
- 수행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동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 등에 지원제외대상이나 사업계획서 반려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에는 평가·심사대상 제외, 협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필요 시 신청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제 수행기간 또는 과제 종료 이후라도 과제와 관련하여 산업부 또는 강원도에서 과제수행 성과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원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매출, 수출, 고용 관련 자료 등)
- 평가결과는 과제책임자와 실무담당자에게 E-mail로 통보

- 붙임 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1부.
2. 재단 기업지원사업 관리규칙 1부.
3. 이전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 신청 서식 각 1부. 끝.